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2

발의연월일: 2021. 2. 1.

발 의 자:민형배·김남국·김두관

김정호 · 신정훈 · 윤준병

이규민 • 이용빈 • 진성준

최강욱 • 황운하 의원

(119]

제안이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정권의 권력유지에 활용된 국정원, 기무사 등 기존 권력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공백을 검찰이 메웠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한 것입니다.

검찰은 주권자가 선출한 권력이 아님에도 법치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위력을 갖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견제장치 없이 독립성만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호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와 집행에 관한 권한만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검

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높이려 합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길입니다.

주요내용

- 가.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196조 삭제 등).
- 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도록 하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 다. 검사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집행권한을 삭제함(제215조제1 항 삭제).
- 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 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38조).
-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 바.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증거로 할 수 있음

(안 부칙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8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1항 중 "수사, 공소제기"를 "공소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삭제한다.

제196조 및 제19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를 각각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98조의2제2항 중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를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을 "사법 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 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4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

로,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0조의6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본문 중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 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 로 한다.

제2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2조(공소제기 전의 구속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②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3조 및 제20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8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를 각각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213조의2 중"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214조의2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제202조"로 한다.

제2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과"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 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8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9조 본문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1조제1항 전단·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 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제1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로한다.

제221조의3제1항 중 "檢事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判事"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는 판사"로 한다.

제221조의4제2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로한다.

제222조제1항 중 "地方檢察廳 檢事가"를 "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8조 중 "檢事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및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 관"으로 한다.

제2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5조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종결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송치 여부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1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2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3조 중 "檢事가"를 "사법경찰관이"로, "檢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

는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후단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5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5조의2제1항 중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는"을 각각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지방경찰청의 장"으로

한다.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12조의 제목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가"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제3조(구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의자를 구속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의 조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	계 등) ①
은 <u>수사, 공소제기</u> 및 공소유지	<u>공소제기</u>
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	<u><삭 제></u>
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	
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	<u><삭 제></u>
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를 수사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	<u><삭 제></u>
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	
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u>것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략)

-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第198條의2(檢事의 逮捕·拘束場所 監察) ① (생 략)
 - ②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제19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점	같
<u></u>	
② 사법경찰관리	
	- —
	-
	-
③ 사법경찰관리	
第198條의2(檢事의 逮捕・拘束場所	折
監察) ① (현행과 같음)	
②	
	- —
즉시 🧦	췌
포 또는 구속된 자의 석방을 .	<u> </u>
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	<u>은</u>

命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 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 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 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 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 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 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 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 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 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하
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u>사법</u>
경찰관
·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第200 候 72(88 年 7 年 7 年 7 年 7 年 7 年 7 年 7 年 7 年 7 年
사법경찰관
,

다.

② ~ ⑤ (생 략)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 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 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 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 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 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u>檢事 또는 司法警察官</u>은 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 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u>사법경</u>
찰관
,
<u>.</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
④ (현행과 같음)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200조의3제3항에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② ~ ⑥ (생 략)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 지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200條의6(準用規定) 제75조, 第 第 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 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期間) (D <u>사법경찰</u> 된	<u> </u>
		 -사번경착과
	⑤ (현행과 깉 5(체포와 피	
의 고지) <u>사법경찰</u> 관	<u> </u>

및 第4項, 제86조, 제87조, 제89
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
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
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
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
第201條(拘束)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
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
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
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
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
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
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
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⑤ (생 략)
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사법경찰관
第201條(拘束) ①
사법경찰
<u>관</u>
·
<u>.</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2조(공소제기 전의 구속기간)

때에는 10日 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第203條(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 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 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內에 公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 하여야 한다.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 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 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 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 속한 때에 검사가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 방하여야 한다.

> ②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는 구 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삭 제>

<삭 제>

限度에서第203條의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限하여許可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 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u>檢事</u> <u>또는 司法警察官</u>에 依하여 拘 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② (생 략)
-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

년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

第208條(再拘束	東의	制限)	1	<u>사법</u>
<u> 경찰관</u>				
 ② (현행과		·		•
제209조(준용)				
				<u>사</u>
<u>법경찰관</u>				
			.3	→ t >-t->
第213條(逮捕等				
① <u>사법경</u>	当世に	<u> </u>		

에는 卽時 <u>檢事 또는 司法警察</u> 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u>檢事</u>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 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 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 審査)①(생 략)
 -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 ⑫ (생 략)
 - ③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 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 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

사법경찰관리	
· ② (현행과 같음) 第213條의2(準用規定)	
<u>법경찰관리</u>	<u>사</u>
	通否
審査)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법경찰관</u>	
 ③ ~ ⑫ (현행과 같음)	
(3)	

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u>제202</u> <u>조·제203조 및 제205조</u>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생략)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 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시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검증을할수 있다.

② (생략)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第 强制處分) ① <u>檢事 또는 司法</u> <u>警察官</u>은 第200條의2·第200條 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u>檢事</u>②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경찰관----

	- <u>제202</u>
<u>조</u>	
·.	
⑭ (현행과 같음)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u><</u>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第216條(令 狀	(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1	사법경찰	<u> </u>
1.・2. (현학	행과	같음)	
<u></u>			사법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 (생 략)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 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 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은 제 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 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 賃

	· (현	 행괴	- 같	음)			
					지 ¢	아니하·	느
						' ' ' 관	
				<u></u>		<u></u> 	
2	<u>사</u>	법경	찰곤	<u>}</u>			
							_
3	<u>사</u>	법경	찰곤	<u>}</u>			

押收)檢事,司法警察官은被疑	押收) <u>사법경찰관</u>
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	
이 押收할 수 있다.	,
第219條(準用規定) 第106條, 第10	第219條(準用規定)
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	
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	
項,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第140條, 第1	
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	사법경찰관
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	
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處分	
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	
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u>사법경찰관</u>
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	
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	
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	② 사법경찰관

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 第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 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 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 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 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 留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 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 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 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221條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① (생 략)

② 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檢

③
<u>사법경찰관</u>
#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
여 검사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
留置의 請求) ① 사법경찰관은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는
<u>판사</u> ② (현행과 같음)
(연영과 실금) 第221條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① (현행과 같음)
②

事가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管轄하는 地方檢察廳 檢事가檢視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 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對하여告訴할者가 없는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었으면檢事는 10日以內에告訴할수있는者를指定하여야한다.
-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u>檢事 또는 司法警察</u> 官에게 하여야 한다.
 - ② <u>檢事 또는 司法警察官</u>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 야 한다.

第238條(告訴,告發과 司法警察官

법경잘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
③・④ (현행과 같음)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u>o]</u>
② (현행과 같음)
<u><</u> 삭 제>
第228條(告訴權者의 指定)
사법경찰관은
<u> </u>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
사법경찰관
<u></u>
· ② <u>사법경찰관</u>
·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
•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 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 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 다.

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의 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고 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제195조에 따 라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 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 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 가 종결된 때에는 그 처분한 <u>날로부터 7일 이</u>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 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 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 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송치 여 부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 다.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第241條(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 第241條(被疑者訊問) 사법경찰관-

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	
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	
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	
야 한다.	<u>_</u>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u>사법경</u>
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	찰관
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	
會를 주어야 한다.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u>사</u>
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	법경찰관이
察廳搜査官 또는 서기관이나	<u>사법경찰관리</u>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	
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u>사법경찰관</u>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	
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	
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신문에 참여하는 피의자에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저

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
조를 준용한다.
<u>③</u>
사법경찰관
<u>4</u>
사법경찰관
<u>, , , , , , , , , , , , , , , , , , , </u>
· ⑤ 제4항
<u> </u>
 (^) 비 거 키 키
<u>⑥</u> 사법경찰관
세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

지)	1	검시	또는	사	법경침	<u> </u>
은	피의	비자를	신문하	ŀ기	전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알	려주여	 0
하다	1					

- 1. ~ 4. (생 략)
- ② 점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 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 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 거나 점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 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 여야 한다.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지) ① <u>사법경찰관</u>	
 1 / 사 / 첫 체 기 기	٥)
1. ~ 4. (현행과 같 ② <u>사법경찰관</u>	
<u> </u>	
사법	<u> 경찰관</u>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의 기록) ①
<u>사법경찰관</u>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u>檢事</u>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 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 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 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
,
1. • 2. (현행과 같음)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사법경
<u> 찰관</u>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u>사법경찰관은 수사</u>

읔	수	있다	
ㄷ	- 1	<i>^</i> /^	•

- ② (생략)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 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 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 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u>검사</u>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 ② <u>검사는</u>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⑤ (생략)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

<u>.</u>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 등) ①
≀્રો મો
<u>사법</u>
<u> 경찰관은</u>
,
② <u>사법경찰관은</u>
③
<u>지방경찰청의 장</u>
④·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 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 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 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 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 | <삭 제> 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 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 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 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 <삭 제>

- 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 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 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ㅣ <삭 제> 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 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 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법률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 ② 사법경찰관이------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 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 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u>.</u>
② (현행과 같음)
< <u> </u>
④ <u>사법경찰관</u>
사법경찰관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⑤ (생략)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u>사법경찰관</u>